

광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504645 판결 [대여금,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태운

피 고 1. F

2. G

피고 1,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H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변 론 종 결 2021. 6. 30.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F, G은 각 원고 A에게 5,500,000원, 원고 B에게 14,775,000원, 원고 C에게 34,680,790원, 원고 D에게 20,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H는 원고 B에게 52,12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D, B, E에게 1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D, E는 I과 형제자매 사이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H는 I의 전 배우자로서 2018. 6. 4. I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 F, G은 이들의 자녀이다.
다. 한편, I은 2019. 10. 3.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30.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B, C, D의 피고 F, G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전까지 다수의 부동산과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구입자금 중 일부를 원고 B, C, D로부터 차용하였다. 망인에게, 원고 B이 2017. 10. 20.부터 2018. 11.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9,550,000원을, 원고 C이 2018. 11. 22.부터 2019. 11. 2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9,361,580원을, 원고 D가 2019. 4. 30.부터 2019. 8. 22.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F, G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에게 각 14,775,000원(= 29,550,000원 × 1/2), 원고 C에게 각 34,680,790원(= 69,361,580원 × 1/2), 원고 D에게 12,500,000원(= 25,000,000원 ×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 D가 망인 명의의 계좌로 위 원고들 주장의 각 금원(망인의 요청에 따라 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도 포함함)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 C, D와 망인은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서로 주고받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② 원고 B, C, D가 망인과 가족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주장처럼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을 수 회 대여하면서도 이체내역 외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변제내역, 잔존 채무액 등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 B, C, D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도 전혀 없고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은 점, ④ 게다가 원고 B, C, D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대여금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위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K, L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C, D가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이 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소비대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 C, D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 D의 피고 F, G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망인이 낙상사고를 당하여 M병원에 입원한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망인의 계좌로 원고 A은 2019. 10. 22.부터 2019. 10.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원고 D는 2019. 10. 9.부터 2019. 10.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망인이 지출해야 할 각종 대출금이자, 보험료, 공과금, 자녀들인 피고들의 학원비, 의료비 등에 사용되게 하였고 망인의 계좌에서 각 일부 금액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이 원고 A의 경우 11,000,000원, 원고 D의 경우 16,200,000원이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F, G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 A에게 각 5,500,000원($= 11,000,000\text{원} \times 1/2$), 원고 D에게 각 8,100,000원($= 16,200,000\text{원} \times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D가 망인 명의의 계좌로 위 원고들 주장의 각 금원(N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포함함)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D는 망인과 남매관계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서로 주고받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 D가 망인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한 이후 망인의 계좌에서 병원비, 통신비 등이 출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 A, D가 망인을 위하여 의무 없이, 망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병원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 D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 H에게 피고 H와 망인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인 2010. 4. 7.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71,554,627원을 대여하였으나 19,430,000원만을 변제받았는바, 피고 H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차용금 52,124,627원(= 71,554,627원 - 1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H와 망인의 협의이혼일 다음날인 2018.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H 명의의 각 계좌로 원고 B 주장의 각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은 남동생인 망인의 부인 피고 H에게 약 9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을 수차례 대여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도 전혀 없고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의 주장처럼 피고 H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고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채 망인과 피고 H가 2018. 6. 4.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상당기간 피고 H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게다가 원고 B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생인 망인과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서로 주고받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 H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B과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K, L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이 원고 B과 피고 H 사이의 소비대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원고 A, B, D, E는 망인과 형제자매 사이로서 평소 집안 대소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매월 30,000원씩 돈을 모으기로 하였고, 이에 2011. 2.경부터 월 30,000원의 금액을 피고 H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 H에게 직접 전해주는 방식으로 적립하였고, 그 금액은 망인과 피고 H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2015년 중반부터 원고 B이 지급해야 할 위 금액은 피고 H가 원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의 이자조로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 A, B, D, E가 2011. 2.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 H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0,830,000원이 되고, 원고 A, B, D, E와 망인은 일종의 계를 조직하여 금원을 출연하였다가 망인이 사망으로 인해 탈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조합재산 관리권한은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F, G와 피고 H는 연대하여 원고 A, B, D, E에게 1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 B, D, E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들이 집안 대소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1. 2.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30,000원씩 합계 10,830,000원을 피고 H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 H에게 직접 전해주는 방식으로 적립하였다는 점이나 위 금액을 망인과 피고 H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 B, D, E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